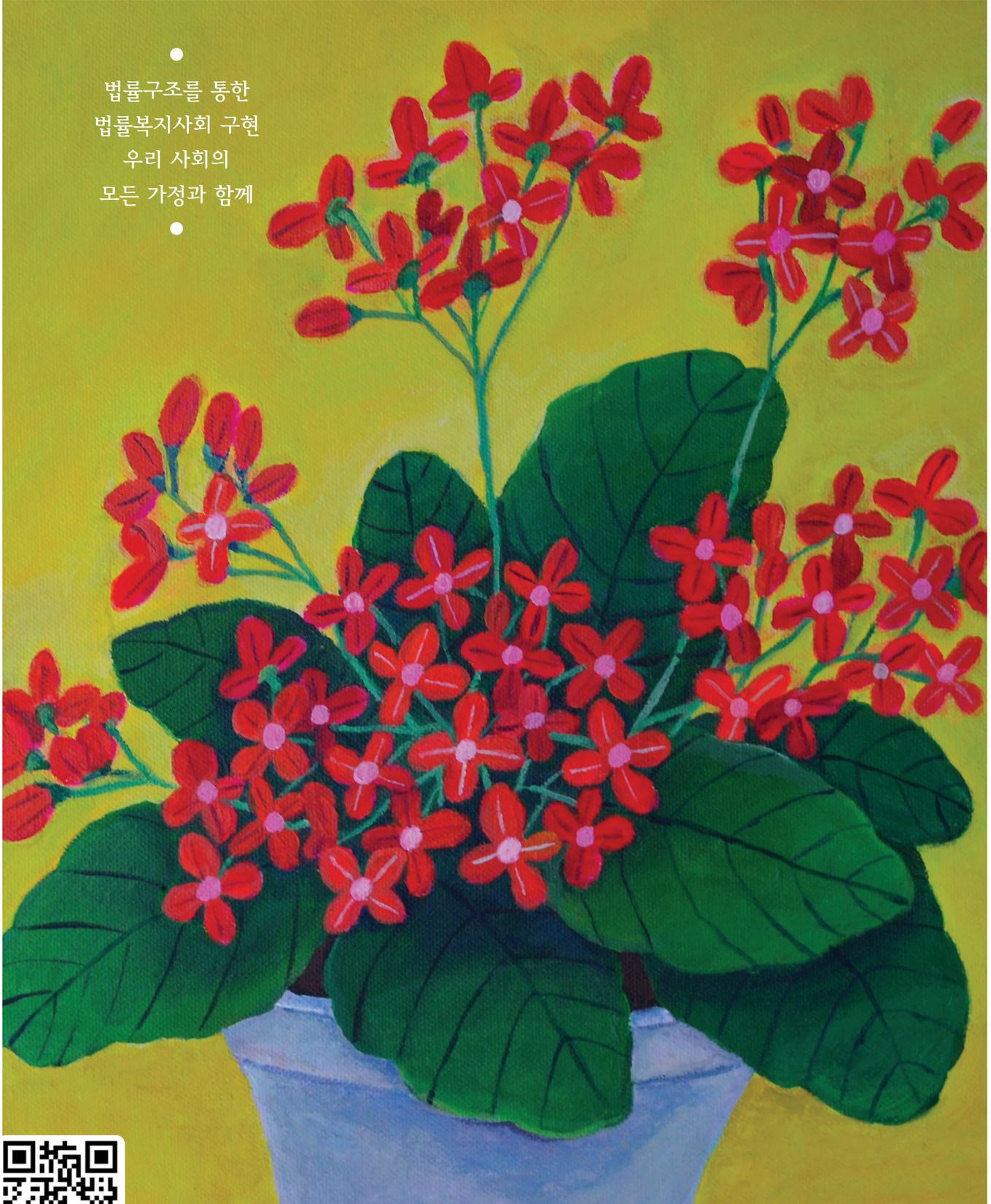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모임이 3월 14일 오후 7시 양재동 엘타워 5층 메리골드 룸에서 열렸다.



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간 본소와 용인 에버랜드에서 비혼모 가정을 위한 캠프가 진행되었다.



3월 25일 본소 강당에서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을 주제로 창립 60주년 기념 첫 번째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 4 • 이 달의 메시지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 6 • 특집 I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심포지엄 ①
- 14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 백인변호사단 모임
- 16 • 특집 II |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추모원고 ②
- 17 • 특집 III |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제2강
- 21 • 가정폭력상담실
- 22 • 교육부 | 비혼모 캠프
- 24 • 소송구조
- 27 • 인터넷 상담
- 26 • 결혼과 인생(158) 영화 이야기  
스포츠라이트 \_ 김용언
- 30 • 상담소 소식
- 32 • 지부소식
- 33 • 상담통계
- 34 • 좋은 책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 이 달의 메시지

###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와 대안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최근 뉴스를 보기 두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며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흉악한 범죄보다 끔찍하게 여겨지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와 관련한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가정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가정은 어떤 지점에 놓여 있는지, 대한민국의 가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상담소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정문제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현실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구성원 간 갈등과 마찰을 반복하다 결국은 이혼에 이르게 되는 데, 예를 들면 배우자의 부정,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부부 사이에 있어 성격이나 사고방식의 차이 등이 직접적인 이유로 거론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가족 구성원 사이의 폭력적 상황이 기저에 놓여 있습니다. 배우자 상호 간의 폭행, 장성한 자녀의 부모에 대한 학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등이 모두 가정폭력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상담소 창설 당시부터 가정폭력은 가정문제에 관한 상담 전반에서 폭 넓게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견고한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자와 아이들은 (가부장인 남편, 아버지가 당연히) 매로 다스려야 하는 존재'로 설정되었고, 가정폭력의 문제는 '매 맞는 아내'라는 단어로 집약되었습니다. 가

정폭력은 지극히 당연한 집안일이었기 때문에 사회적 인 문제로 공론화하고 공권력의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한 1998년 가정폭력특별법이 시행되기까지 상담소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법이 시행되고 상담소가 앞장서 가정폭력상담을 특화하여 진행하면서, 우리 가정의 모습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고 무엇보다 사적인 문제로 여겼던 가정폭력을 공적인 사회범죄로 인식시키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또 잠시는 어느 정도 폭력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 때마다 끊임없이 법을 개정하여 가정폭력에 대처해 왔으나 법이 시행되고 20여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가정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 양상은 더욱 잔인해지고 있으며 가정 안에서 폭력은 만성질환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0년 동안 가정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가정 내에서 폭력에 관심을 갖고 폭력예방과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상담소는 창립 60주년의 해를 보내면서 그 첫 번째 연구과제로 다시 가정폭력의 문제를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3월 25일 상담소 강당에서 열린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에 관한 심포지엄에는 강당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이 주제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담론을 함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법의 시행 이후 잠시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던 가정폭력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일 때에는 그간 감추기만 했던 상황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했습니다. 이는 일면의 진실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폭력이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았던 상황 혹은 그것을 인식하더라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러운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폭력 상담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은 참으로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폭력이 이루어지는 관계나 폭력의 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할 정도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

니다. 일례로 상담 초기에는 주로 아내에 대한 남편의 학대가 가정폭력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시일이 지나면서 그전까지 피해자였던 아내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반격에 나서며 부부 상호 간의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사춘기를 지난 자녀들이 부모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 그리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은 권력의 문제이며 가정폭력은 가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 전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그 문제의 근원, 배경과 동기 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폭력적인 상황과 가정폭력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의 경제적 위기와 극단적인 양극화 혹은 흡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계급론들이 가져오는 절망이 가정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 상담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니 가정이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증가할 때 사회는 물론 국가도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4월 총선 이후 입법부가 새롭게 꾸려질 것입니다. 국회는 물론 정부와 정책 담당자들이 이러한 사회와 가정의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족관련 부서나 단체들에서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적잖은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만 매번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이벤트를 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가정의 문제를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때 가정폭력의 문제 또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할 것이며 국가경쟁력 제고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 (1)

###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특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된 1998년 7월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등의 가정보호 수탁기관, 서울중앙·서부·남부지방검찰청 지정 가정폭력상담소로 위촉되어 가정폭력행위자의 폭력적인 성향을 교정하기 위해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2015년 12월말까지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된 행위자 수는 1,249명에 달한다.

본 가정폭력행위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조사연구는 첫째, 2015년에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126명에 대한 항목별 상담통계를 분석하고 둘째, 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본 상담소에 상담위탁되어 상담이 종결된 1,124명에 대한 이슈별 특성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가정폭력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가정폭력 관련 정책 및 상담의 개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실시하였다.

#### II. 연구결과

##### 가. 2015년 상담이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통계 분석

##### 1. 행위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 남녀별

행위자 126명의 성별을 보면 남성이 102명(81%), 여성이 24명(19%)이었다. 여성 행위자 중 17명은 부부가 함께 위탁된 경우였다.

###### (2) 연령별

연령별로 보면 행위자의 경우 40대가 35.7%(4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28.6%), 30대(2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경우는 40대가 28.6%(36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27%) 순으로 나타났다.

###### (3) 교육정도별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행위자는 고등학교 졸업이 35%

(4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이 33.3%(42명)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이 36.5%(46명)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교 졸업이 32.5%(41명)로 나타났다.

#### (4) 직업별

행위자의 직업을 살펴보면 회사원이 27.8%(35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이 20.6%(26명)을 차지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부가 35%(4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사원과 단순노무가 각 19%(각 24명)를 차지하였다.

#### (5) 경제상태별

월수입을 기준으로 경제상태를 살펴보면, 행위자의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가 33.3%(42명)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월수입이 없거나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42.2%(53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위자와 피해자가 법률혼 부부인 경우가 94명으로 74.6%를 차지하였다. 부부관계가 아닌 부모-자녀 관계 또는 남매 관계인 경우는 15.1%(19명)을 차지하였다.

#### (7) 혼인형태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혼인형태를 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가 62.7%(79명)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어느 한쪽이 재혼이거나 모두 재혼인 경우도 20.6%(26명)을 차지하였다.

#### (8) 동거기간별

행위자와 피해자의 동거기간을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가 33.3%(4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7.5%(22명)를 차지하였다. 가족생활주기로 살펴보았을 때,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동거기간은 자녀양육이 주관심사가 되는 시기로 결혼생활

에 대한 만족도가 최하점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부부간 신뢰가 없거나 의사소통 미숙 등으로 부부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했을 때 갈등이 발생하면 폭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동거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는 32.5%(41명)로 나타났는데, 혼인기간이 오래된 부부는 부부갈등이 오랜 기간 미해결상태로 축적되었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2. 행위자의 폭력 유형 및 폭력 수준에 따른 분석

### (1) 폭력유형별

폭력유형별로 살펴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65.8%(83명)로 가장 많아 가정폭력 중에서 부부폭력, 특히 아내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 유형	구분	수(명)	백분율(%)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		83	65.8
아내에 의한 남편 폭력		7	5.6
남편에 의한 아내 폭력에 대한 아내의 맞대응		14	11.1
아내 및 자녀 폭력		3	2.4
자녀 폭력		13	10.3
부모 폭력		5	4.0
남매 간의 폭력		1	0.8
합 계		126	100

### (2) 폭력행위의 수준

행위자의 폭력행위 수준을 살펴보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가 98.4%(124명)로 가장 많았다.

### (3) 폭력행위의 정도

좀 더 구체적으로 행위자의 폭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폭력정도에 따라 밀치는 수준에서 뺨을 때리는 정도까지인 경미한 폭력과 발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한 폭력으로 구분하였다.

경미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80.2%(101명)로, 세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4%(68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 목	폭력동반 유무	
	없음	있음
<b>언어 폭력</b>	-	<b>126(100)</b>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을 했다.	-	126(100)
<b>경미한 폭력</b>	<b>25(19.8)</b>	<b>101(80.2)</b>
2.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87(69.0)	39(31.0)
3. 실제로 물건을 던지거나 부셨다.	84(66.7)	42(33.3)
4. 배우자를 겨냥해서 물건을 던졌다.	89(70.6)	37(29.4)
5. 배우자를 세게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들었다.	58(46.0)	68(54.0)
6. 손바닥으로 뺨이나 다른 곳을 때렸다.	82(65.1)	44(34.9)
<b>심한 폭력</b>	<b>37(29.4)</b>	<b>89(70.6)</b>
7. 배우자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55(43.7)	71(56.3)
8. 배우자를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102(81.0)	24(19.0)
9.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81(64.3)	45(35.7)
10. 배우자 목을 졸랐다.	109(86.5)	17(13.5)
11. 배우자를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95(75.4)	31(24.6)
12. 배우자를 담뱃불로 지지거나 칼이나 흉기로 휘둘렀다.	96(76.2)	30(23.8)

심한 폭력이 있는 경우는 70.6%(89명)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56.3%(71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를 사정없이 마구 때린 경우가 35.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칼이나 도끼와 같은 위험한 흉기로 위협하거나 실제로 다치게 한 경우가 24.6%(31명)로 나타났다.

행위자 126명 모두 신체적 폭력과 함께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언어적 폭력을 동반하였다. 행위자들은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만 폭력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는 수치감과 모욕감으로 인해 더욱 무기력해지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수 있다.

### 3. 행위자의 폭력행사 원인에 따른 분석

#### (1) 폭력행사 원인

행위자가 가정법원의 상담위탁처분 또는 검찰청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 사건에서의 폭력행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32.9%, 77건), 부부간 불신(21.8%, 51건), 음주(17.5%, 41건) 순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가능 항목임). 위 세 가지 원인은 순

위의 차이는 있더라도 행위자 폭력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등 성격차이'로 32.9%(77건)을 차지하여,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바로 가족구성원들 간에 불평등한 관계를 조성하고 가정폭력을 심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부부간 불신(21.8%, 51건)이다. 남편의 외도, 상습적인 거짓말 등이 아내로 하여금 남편을 불신하게 만들어 부부갈등이 증폭되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확대되면서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게 되고 폭력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다.

셋째, 폭력행사의 원인 중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17.5%, 41건)로 나타났으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34.4%(32명)에 해당하였다. 술은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감소시킴으로써 폭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배우자를 통제하기 위하여 술을 마시고 폭력을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자녀간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행사는 13.3%(31건)으로 2013년 8.5%(8건), 2014년 12.5%(21건)와 비교했을 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폭력행사 원인	구 분	수(건)	백분율(%)
가부장적 사고 등 성격차이		77	32.9
부부간 불신		51	21.8
음주(주벽, 알코올 중독 등)		41	17.5
부모-자녀간 갈등		31	13.3
경제갈등		19	8.1
국가, 언어 등 문화적 차이		10	4.3
시가와외의 갈등		5	2.1
합 계		234	100

※중복응답 가능한 항목임.

#### 4. 행위자의 상담요인에 따른 분석

##### (1) 상담대상자별

행위자 본인과 피해자, 그리고 사건 당사자들을 제외한 가족(특히 자녀)이 함께 상담한 경우가 85.7%(108명)을 차지하였으며, 행위자 본인만 상담을 한 경우는 14.3%(18명)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는 상담을 통해 대다수의 피해자인 아내가 행위자인 남편의 폭력이 중단되어 관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변화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향을 입증하였다.

##### (2) 상담방법별

2015년 본 상담소의 가정폭력행위자 상담은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음주문제 상담, 집단상담, 교육강좌, 부부캠프, 최종 개별상담/부부상담/가족상담 등 총 6단계로 진행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자조모임인 라오니 모임과 라오니 캠프를 운영하였다.

2015년에 상담이 종료된 126명의 87.3%(110명)에 달하는 행위자가 개별상담뿐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상담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종합적 서비스의 제공은 행위자에게 단계에 따라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행위의 교정과 부부관계 회복에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3) 상담 종료 이후의 부부관계

상담 종료 이후의 부부관계를 살펴보면,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53.9%(68명)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별거를 선택한 경우가 19.8%(25명)로 나타났고, 부부가 동거를 결정하였다더라도 여전히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갈등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부도 15.9%(20명)로 나타났다. 부부가 냉담한 관계에서 동거를 결정한 경우에는 상담종료 후에도 전화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오랜 기간 미해결의 상태로 축적되어온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한 경우도 4.8%(6명)을 차지하였다. 이혼을 통하여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이혼전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계함으로써 지금까지의 결혼생활을 점검해보고 특히 배우자와의 갈등이 어떤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혼 외에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나.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이후 2015년까지 나타난 가정폭력의 양상 및 추이<sup>1)</sup>

##### 1. 여성 행위자의 증가

여성 행위자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에는 전체 행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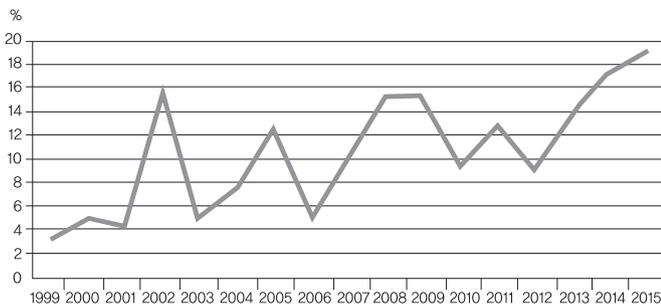
1)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상담위탁되어 상담종결된 1,124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998년 10월 21일 첫 번째 행위자가 위탁되어 1998년에는 종결된 사건이 없으므로 본 절에 표기되어 있는 모든 표에서는 1998년도를 기재하지 않았다.

중 3.2%(1명)에 불과했던 여성 행위자의 수가 2015년에는 19%(24명)로 5배 이상 증가하였다. 아내의 맞대응으로 인한 여성 행위자의 증가는 부부가 함께 위탁된 여성 행위자의 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1999년 1쌍의 부부가 위탁되었던 것에 비해 2015년에는 17쌍의 부부가 위탁되어 17배나 증가하였다. 한편 남편의 폭력에 대항하여 아내가 맞대응한 비율은 1999년 2.9%에서 2015년 11.1%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여성 행위자의 증가는 단순히 남성 피해자의 증가라고 이해하기 보다는 여성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구조기관에서의 교육을 통한 의식의 변화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되며, 과거 아내들이 남편의 폭력에 무기력하게 당하였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폭력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1999~2015년 여성 행위자 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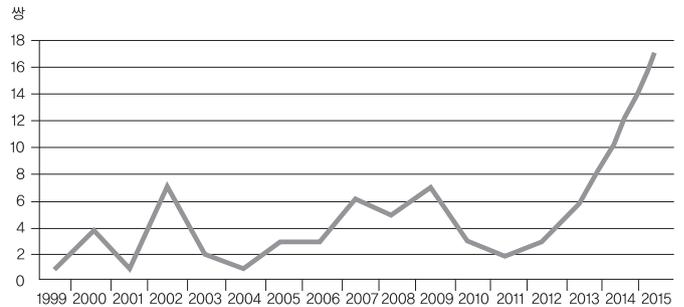
연 도	명(빈도)	연 도	명(빈도)
1999년	1(3.2)	2008년	8(15.1)
2000년	4(4.9)	2009년	10(15.2)
2001년	3(4.3)	2010년	7(9.3)
2002년	9(15.3)	2011년	7(12.7)
2003년	3(4.9)	2012년	4(9.1)
2004년	5(7.4)	2013년	8(13.6)
2005년	7(12.3)	2014년	16(17.2)
2006년	3(5.0)	2015년	24(19.0)
2007년	9(10.0)	합 계	128명



여성 행위자 수

〈 1999~2015년 부부가 위탁된 경우 변화 〉

연 도	쌍	연 도	쌍
1999년	1	2008년	5
2000년	4	2009년	7
2001년	1	2010년	3
2002년	7	2011년	2
2003년	2	2012년	3
2004년	1	2013년	6
2005년	3	2014년	11
2006년	3	2015년	17
2007년	6	합계	8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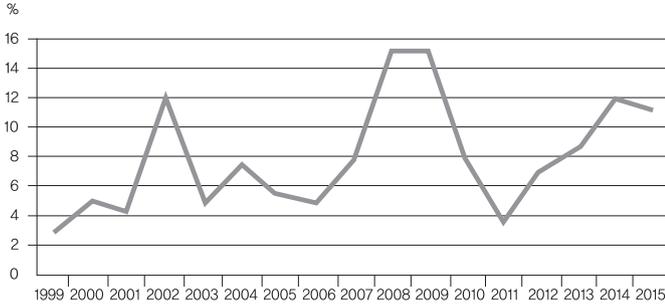


부부가 위탁된 경우

〈 1999~2015년 아내의 맞대응 비율 변화 〉

연 도	명(빈도)	연 도	명(빈도)
1999년	1(2.9)	2008년	8(15.1)
2000년	4(4.9)	2009년	10(15.1)
2001년	3(4.3)	2010년	6(8.0)
2002년	7(11.9)	2011년	2(3.6)
2003년	3(4.9)	2012년	3(6.8)
2004년	5(7.4)	2013년	5(8.5)
2005년	3(5.3)	2014년	11(11.9)
2006년	3(5.0)	2015년	14(11.1)
2007년	7(7.8)	합계	95명 <sup>2)</sup>

2) 1999년부터 2015년까지 부부가 위탁된 총 수(82명)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간 상호 폭력이 있었음에도 남편의 폭력에 맞서 맞대응한 아내만 상담위탁된 경우(13명)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아내의 맞대응

## 2. 부부폭력에서 동거기간별 폭력 발생률 변화

부부의 동거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와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는 그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동거기간이 5년 미만으로 비교적 동거기간이 짧은 경우와 30년 이상으로 동거기간이 오래된 경우는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부부 동거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경우 1999년 3.6%(1명)에 비해 2013년 28.8%(17명)로 8배나 증가하여 이 시기에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하는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5년 미만의 동거기간에서 폭력 발생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행위자 측면에서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갈등을 극복하고 배우자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면에서는 막연히 참고 배우자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폭력초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받고자 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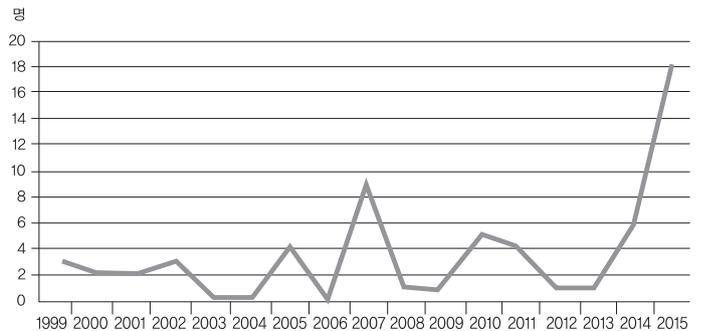
한편 30년 이상 동거한 경우 1999년 3.6%(1명)에 비해 2015년 15.9%(20명)로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노년이혼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노년세대가 자신들의 행복과 안녕보다는 자녀의 미래와 가족 공동체의 안정에 초점을 두었다면, 점차 자신의 안전한 노후와 행복을 중요시하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폭력 증가

부부관계가 아닌 부모-자녀 관계 등 다양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위탁된 행위자 중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총 60명이었는데, 1999년 8.8%(3명)에서 2015년에는 14.3%(18명)로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 1999~2015년 부모자녀 관계의 수 변화 〉

연도	명(빈도)	연도	명(빈도)
1999년	3(8.8)	2008년	1(1.9)
2000년	2(2.4)	2009년	1(1.5)
2001년	2(2.9)	2010년	5(6.7)
2002년	3(5.1)	2011년	4(7.3)
2003년	-	2012년	1(2.3)
2004년	-	2013년	1(1.7)
2005년	4(7.0)	2014년	6(6.5)
2006년	-	2015년	18(14.3)
2007년	9(10.0)	총계	60명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폭력은 4가지 관계 유형 즉 ① 부모의 미성년 자녀 폭력(아동학대) ② 부모의 성년 자녀 폭력, ③ 성인 자녀의 부모폭력 ④ 미성년 자녀의 부모폭력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각 관계 유형에서 폭력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다.

### 3-1. 부모의 자녀폭력

#### ① 부모의 미성년 자녀 폭력(아동학대)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60건 중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28건(46.7%)으로 나타났다. 이 중 24건(85.7%)은 아버지가 행위자였고, 4건(14.3%)<sup>3)</sup>은 어머니가 행위자였다.

이들 부모는 경찰 및 법원에서의 조사과정, 상담과정에서 자녀를 학대한 것이 아니라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문제행동(잦은 거짓말, 게임중독, 잦은 가출과 외박 등 비행행동 등)을 이유로 훈육 차원에서 과도한 체벌을 하였다(34.9%). 위험한 가위로 자녀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야구 방망이를 사용해 수회 때리는 등 훈육 차원에서 체벌을 했다고 볼 수 없는 과한 행동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부모 자신의 술 문제로 인해 음주 후 자녀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는데(27.9%), 이 경우 아내에 대한 폭력도 발생하였다. 셋째, 부부가 불화하여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적 약자인 자녀의 학습이나 생활 태도 등을 지적하면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다(23.3%). 이혼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과도한 책임감으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13.9%).

#### ② 부모의 성인 자녀 폭력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60건 중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6건(26.7%)으로 나타났다. 이 중 15건(93.8%)은 아버지가 행위자였고, 1건(6.3%)은 어머니가 행위자였다.

부모가 성인 자녀의 문제행동(음주, 잦은 외박, 아버지에게 대한 불손한 태도, 동성애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39.3%), 부모 자신의 술 문제로 인해 음주 후 자녀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32.1%). 그리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불만이 쌓이면서 부모와 성인 자녀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발생한 폭력도 있었다(28.6%).

### 3-2. 자녀의 부모폭력

#### ① 성인 자녀의 부모폭력

부모자녀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한 60건 중 성인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15건(25%)으로 나타났다. 이 중 9건(60%)은 아들이 행위자였고, 6건(40%)은 딸이 행위자였다.

대부분의 성인자녀는 어린 시절 지속적인 부모의 폭력을 경험하였고, 현재까지 지속되는 폭력에 불만을 품고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53.1%). 성인이 된 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부모에게 물질적인 부분을 의존하면서, 음주와 담배 등 중독의 문제로 끊임없이 부모와 갈등상태에 놓여있다가 폭력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28.1%). 이들의 부모 역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음주, 의처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상호 복합적인 문제의 마찰로 폭력이 발생되었다.

#### ② 미성년 자녀의 부모폭력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담위탁된 경우는 1건이었고, 아버지와 상호간 폭력으로 함께 위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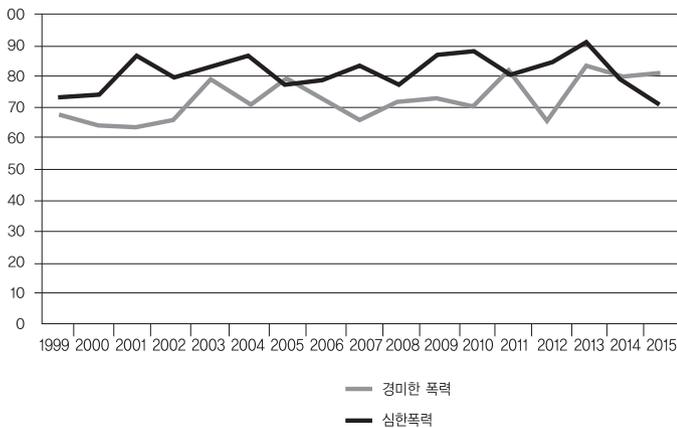
아버지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은 부부간의 불화를 야기하였고, 내성적인 성격의 아들은 불안정한 부부관계로 인한 많은 영향을 받았다. 결손가정의 친구와 친하게 지내며 컴퓨터 게임에 몰입한다는 이유로 중학교 진학시기 주

3) 계모 1건 포함시킴

거지를 이전하여 알고 지낸 친구들이 없는 학교로 진학하면서 학교부적응과 등교거부가 시작되었고, 부모와의 적대적인 관계, 게임중독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게임을 지속하는 문제로 아버지의 체벌이 이어졌으며, 본건에서는 아버지가 처분이라도 받고 나아졌으면 하는 마음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 4.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증가

행위자의 심한 신체적 폭력에 비해 경미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행위자의 심한 신체적 폭력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행위자의 입장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폭력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한편,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의식 개선 및 가정폭력처벌법 시행 결과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III. 논의 및 제언

첫째, 상담현장에서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의 남성 행위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행위자의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별화할 뿐만 아니라 여성 행위자에게 적합한 상담 관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여성 행위자의 경우 남편의 폭력에 대한 방어나 반격, 혹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위, 또는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선택한다는 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한다.

둘째, 부부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정폭력 상담 프로그램을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점차 확대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 확립을 위해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 시의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의 직접적인 행위자와 피해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대상자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함으로써 가정폭력에 대한 재인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폭력의 범주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 또한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결혼 전 부부 교육 내지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부부는 누가 누구를 통제할 수 있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므로, 부부 교육을 통해 부부간 갈등이 발생할 때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부모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이 폭력을 학습화, 내면화함으로써 폭력을 재생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부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 교육을 통하여 자녀를 체벌이 아닌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부모 자녀간 폭력이 감소될 것이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차연실 상담위원



## 백인변호사단 모임

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모임이 3월 14일 (월) 오후 7시 양재동 엘타워 5층 메리골드 룸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의 사회로 광배희 소장의 인사말씀, 김춘봉 대표변호사 및 조대연 변호사의 환영과 격려의 말씀, 그리고 박영립·임재연 변호사의 건배제의 및 건배사와 식사, 환담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소 광배희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인변호사단 결성의 취지와 역사를 설명하고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속 변호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춘봉 대표변호사는 여성법률상담소 시절부터 시작된 상담소 창설자 이태영 선생과의 일화 및 상담소 역사 전반에 대해 회고하면서 앞으로 더욱 활발할 활동을 하도록 격려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 기념행사 중 하나로 82명의 변호사와 상담소 임직원 등 9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된 당일 모임에서 참석 변호사들은 상담소의 지속적인 발전에 찬사를 보내며 법률구조 봉사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 참석 변호사 명단

강인영(천안)	강중협	강호정(부천)	고미진
공영서(수원)	권성희	권정호	길영인
김경철(안양)	김기현(안양)	김미혜	김상군
김서현	김선홍(원주)	김성규	김수연
김영옥	김재련	김재희(고양)	김정화(인천)
김지후	김진아	김춘봉	김태의
김태주	김학민	김현재	김형중
김혜연	남기웅	라은정	류은아
박기옥	박석순	박수열	박순덕
박영립	박유빈	박은정	박효선
서혜진	선형중	신은숙	양진영(안산)
여지은	오민주	위철환(수원)	유정아
이경숙	이경호	이교림	이남진
이병현	이수연	이승주	이영임
이원목	이정은	이지원	이지은
이현범	임재연	임주용	임지운
장상현	장철진	장현준(안산)	전성배
정대화	정상수	정수경	정영미(의정부)
조대연	채성욱(성남)	천정아	천정환
최수령	홍명호	황규범	황진호

(가나다 순)



△ 인사말을 하는 본소 광배희 소장



△ 환영과 격려의 말씀 - 김춘봉 백인변호사단 대표변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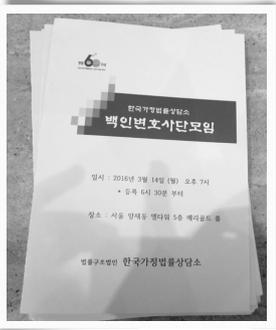


△ 환영과 격려의 말씀 - 조대연 변호사



△ 건배제의를 하는 박영립·임재연 변호사

# 백인변호사단 모임





이태영 선생님 탄신 백주년 추모원고 23\*

## 든든하고 넉넉한 울타리

### 강 금 실

변호사 · 전 법무부 장관

고 이태영 박사님을 떠올리면 항상 상냥하게 웃고 계신 초승달 모양의 눈매와 맑고 시원시원한 목소리가 먼저 다가온다. 키는 흰칠하셨고, 활달한 기운이 넘치시며 성큼성큼 움직이시고, 주위 사람 모두를 포용하며 휘어잡는 카리스마 있는 분이셨다. 또, 아주 멋쟁이셨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 시대가 기억하는 리더, 한 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는 박사님처럼 돌출한 거인이고, 그 인물됨은 예사롭지 않게 태어나며, 또 키워지는 것 같다. 지금 와서 그분을 돌이켜보면, 부끄러울 따름이다. 박사님이 그 어려운 시절에 사회적 삶을 헤쳐 나오시며 보여주신 리더십과 능력과 공헌에 비춰 보면, 그 뒤를 잇는 법률가 출신의 여성으로서 후배라고 나서기도 죄송스럽다. 만일 살아 계시다면 지금 어딘가에서, 아니 이 암담하고 답답한 시기에 너희 뭐하고 있는 거니 하고 애정이 담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야단치실 것 같다.

박사님은 참 품이 크고 따뜻하셨다. 나는 박사님께서 베풀어 주신 연회에 초대되어 받아먹기만 했을 뿐, 달리 해드린 것도 없고, 또 살뜰한 개인적 관계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무렵, 그 시절은 여성이 시험에 붙었다는 사실이 텔레비전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건이었던 시절이었다. 대학을 나와서 아직 사회 물정도 모르는 채 시험에 붙어 얼떨떨하게 있는 미숙한 여성 후배들을 챙겨 주신 분이 한 사람 있었으니, 그분이 이태영 박사님이셨다.

여의도 가정법률상담소에 오라 해서 찾아갔던 생각이 난다. 아주 오래전이었지만, 가정법률상담소 실내가 참 포근하고 아름답게 장식되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와 함께 사법시험 23회를 합격한 다른 두 여성도 아마 모두 갔을 것이다. 함께 갔던 김덕현 변호사가 검색 정장을 차려입고 팔뚝까지 올라오는 정장용 장갑을 끼고 다소곳이 서 있던 모습이 떠오른다. 마치 망망대해에 드문드문 떠 있는 섬처럼 여성들이 지극한 소수자로 법조계에 진출하던 시절이었다. 여성들은 너무 적어 두드러지게 주목받는 반면에 문화도 시설도 그 어느 것도 여성을 위한 배려라고는 없어서 마음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절이다.

또 가정법률상담소도 여성을 위한 여성단체로서는 한국 사회에 처음 닦을 내린 섬 하나였다. 박사님은 그 단체뿐 아니라, 어린 여성 법조 후배들을 챙겨 주시던 든든하고 넉넉한 울타리였다. 박사님과 가정법률상담소는 여성 법조인들이 모이는 거처였다. 우리 다음 해에 합격한 추미애 의원의 축하파티에도 갔던 기억이 난다. 박사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집중시켜서 자신의 성공과 발전뿐 아니라, 우리가 몸담은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의 모범을 보이셨다. 한 영역을 개척하는 어려움을 뛰어넘어 박사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참 감명 깊고 완전함에 가까운 것이었다.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공동의 일을 창조하고, 또 그 선하고 아름다운 성과들을 통해서 수평으로 수직으로 정의로운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던 것이다.

참 크신 분이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박사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리더십의 핵심은 자애와 큰 마음,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전문가적 역량과 열정적 조직력인 것 같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크게 더 높이 마음을 키우고 온몸으로 삶을 감당해 나가는 지칠 줄 모르는 의지를 다져 봐야겠다. 그분의 가르침을 새겨 보면서.

\* 본소에서는 2014년 6월 창설자 이태영 선생님의 탄신 백주년 기념 추모문집 「사랑과 열정으로 세상을 바꾸다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 이태영」을 발간하였다. 이 책에 담긴 각계 인사들의 추모의 글을 연재한다.

## 뇌의 속성과 다름

김 병 후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우주는 137억 년 전에 그리고 지구는 45억 년 전에 탄생하였습니다. 생명체의 탄생 시점에 대해서는 가설이 분분합니다. 생명이란 종족번식을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이 조건하에서 최소한의 생명단위로 볼 수 있는 원핵세포가 지구상에 출연한 것이 33억 년 전입니다. 우리가 아는 박테리아가 바로 이 원핵세포이며, 하나의 세포지만 하나의 생명체인 것입니다.

원핵세포는 원시세포여서 생김새도 단순하여, 세포막과 유전자로만 이루어집니다. 이 세포막이 '나'와 나이의외의 '환경'을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원핵세포는 생존을 위해 먹이로 외부의 물질을 섭취하고, 이를 소화 후 배설하는데, 원핵세포가 외부 물질인 다른 원핵세포를 섭취한 뒤, 이 효용성을 활용하기 위해 이를 소화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기관으로 받아 들여 공생하는 과정이 자연적으로 만들어 지기까지 6억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가 세포내 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된 것입니다. 세포 간 결합이 처음으로 이루어져 다세포 생물이 탄생

할 수 있는 진핵세포가 만들어 진 것입니다. 원핵세포가 진핵세포가 되는데 진화적으로 6억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핵세포들이 연합하여 다세포생물이 되는 데는 무려 20억년이 걸렸습니다. 세포들간의 연합이 진화되는 것이 그만큼 생물학적으로 복잡하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진핵세포는 핵막이 있어 이안에 유전물질인 핵을 분리시켰고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여러 세포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에는 유전자 2가지가 있는데 핵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모계를 통해서만 유전됩니다.

사회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소통하는 것을 세포간의 관계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가 연결되어 다세포 생물이 되는 과정은 진화적으로 20억년이 소요되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연한 돌연변이로만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가 막힌 우연 속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가

\*\* 올해 본소의 무료공개강좌인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는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2월부터 12월까지 (8월 휴강) 10강에 걸쳐 진행된다.

지금처럼의 유기적 관계로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엄청난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나 원핵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이분법으로 번식하기에 유전자는 영원히 동일하게 생존합니다. 하지만, 다세포 생물은 짧지 않은 생을 반드시 마감하고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진화는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짧은 생을 사는 다세포 생물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삶이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세포 생물은 죽음을 맞게 되면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세포는 아무리 젊더라도 같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7억 년 전쯤에 다세포 생물들이 지구상에 출현해 5억 년 전 쯤 지구 상의 산소 농도가 늘어 동식물들이 지구상에 폭발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동물이 먼저 생기고 그 후에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발달된 생물인 식물이 생겼습니다. 모든 동물은 활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동물은 살기 위해 활동을 하여야 하고 그래서 활동하지 않는 동물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을 수 없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은 활동하려는 의지가 적은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개체를 행복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개체 스스로가 가지기 위해섭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대와 같이 스트레스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많이 겪는 사회에서는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가장 손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 시점



에서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쉽게 가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사를 할 때 대충 아무거나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보다 그 시점에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먹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내 몸의 상태에 따라 나의 감정은 결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현대인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에 대한 행동목록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훨씬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 질 것입니다.

뇌는 동물이 움직이기 위해 진화시킨 기관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뇌를 '내면화된 운동기관'이라고 규정합니다. 외부 세계와 자신의 몸에 대한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과 그 개체가 움직이기 위한 운동신경 중간 과정에 뇌가 존재합니다. 뇌는 철저히 움직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동물은 살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인간 뇌의 가장 큰 특징은 더 먼 앞으로의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측은 한 순간 그 개체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순간에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동물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 상황에 맞게 올바른 예측을 하지 못한 동물은 생명을 잃고 도태됩니다. 뇌는 매 순간 어떤 행동이 개체의 생존에 필요한지 계속 예측을 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계속 뭘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강박적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의 뇌가 예측을 쉬지 않고 하면 생존하지 못할 거라는 공포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중독입니다.

우리는 뇌의 효율성을 위해 매일 반복되는 행위는 자동적으로 행동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중심뇌가 아닌 기저핵에 저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행동 중 많은 경우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의식하지 않고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양말을 빨래바구니에 넣고 치약을 쓰고 나면 뚜껑을 닫으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당연히 옳은 아내의 말을 남편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 남편에 대해 아내들은 화를 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

소한 행동을 바꾸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바꾸려면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쓰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의식적인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집중은 사업계획이나 시험준비와 같은 중요한 일을 할 때 작동됩니다.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 까지 그런 집중을 하다가는 해당 당사자의 뇌는 정신적 에너지의 소비가 지나쳐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생활습관은 자동으로 행해지는 행동이어서, 이를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수많은 행동들인 고정행위패턴(FAP : Fixed Action Pattern)은 종마다 다르고, 개체마다 다른 행동패턴을 습득하여 계속 변화합니다.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할 때 헤엄치는 행동이, 기어 다니는 행동으로 변하는 것처럼 종(種) 자체가 진화하는 경우도 있고, 축구를 새로 배우는 것처럼 특정 운동능력을 발달시키는 것과 같이 개별적으로 습득하는 것도 있습니다. 걷는 행위는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지만, 피아노 연주처럼 후천적으로 습득한 능력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한 행위를 많이 습득하느냐가 경쟁력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반복 행위이든 의식을 집중해서 하는 행위이든 ‘특정 행동이 어떻게 유발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행위를 일으키는 동기가 바로 감정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대부분의 행동은 우리도 의식하지 않는 감정에 의해 이뤄집니다. 감정은 여러 가지 감각에 의해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 냄새는 화학적 분자상태가 감각기관에 직접 닿아 감지됩니다. 후각은 원시동물에서부터 사용됩니다. 그래서 후각이 감정의 제일 기본적인 부분을 이루며, 진화되어 뇌에서 감정을 다루는 중추로 진화하게 됩니다.

인간과 같은 고등동물에서 편도체는 공포, 사랑, 분노 등이 관련 되어 있는 감정중추이며, 대상피질은 신체와 마음의 통증에 관여하고, 뇌하수체는 그 정서가 신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관장합니다. 이 들 뇌 부위를 변연계라고 합니다. 포유동물에게만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뇌의 기능으로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에 의해 행동하게 됩니다.

세포와 세포가 모여서 다세포생물이 만들어지는데 20억년이 걸렸고, 20만년전에 지구상에 출현한 인간은 원시시대, 씨족-부족사회를 거쳐 인지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약 3만년~7만년 사이에 인지혁명이 일어나 인간 사이에서 유연하고 상호작용하는 언어를 발전시키게 되고, 이로 인해 전설, 신화, 종교, 신(神)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는 150명 이상의 집단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인간의 뇌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어 인지혁명을 통해 ‘허구’를 만들어 냈고 이러한 가상의 실재가 인간집단의 소통, 문명,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속에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언어로 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해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생존을 보장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람들간에 서로 다름을 가지고 다투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다른 생물에 비해 월등하게 발달한 인간의 뇌가 사회적 관계에서 충돌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각자의 뇌는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생활에 적합하도록 조정을 끊임없이 합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뇌는 도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뇌는 외부 인간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를 받아들여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항상 집단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도록 변화시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도 정도를 벗어나는 사고와 행동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따라서 각 개인마다 모두 자신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뇌도 이렇게 진화하고 적응해 왔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않습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힌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만이 옳고 객관적이며 타인의 생각과 사고는 잘못된 오류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하는 사람과 지적받는 사람 중 누가 더 괴로울까요? 당연히 지적받는 사람입니다. 지적하는 사람 입장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겠지만, 지적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자신은 동의할 수 없는 타인의 관점을 받아 들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뇌가 예측하는 나름대로의 우선순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퇴근한 남편이 당연히 해야 할 양말을 빨래바구니에 넣지 않은 행위를 지적하는 것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자신의 뇌는 내일 회의를 위한 구상이나, 지친 뇌에 휴식을 주고 다음 날 중요한 일을 하는 것에 더 행위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반면 아내들은, 남편들은 소중한 가정의 삶에는 무지하면서 일의 경쟁에서 이겨야만 훌륭한 가장이라고 생각하는 산업화 시대의 전근대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율이 높아진 것은 이러한 부부간의 의식차이가 큰 원인중 하나일 것 입니다. 아내의 행복은 성공하고 훌륭한 남편과 사는 것이 아니라,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것이 편안하고 자신을 받아 주고 그리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 것 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이 열정적이라면, 시간이 지나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주는 관계가 더 중요해 집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지적하고 듣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것보다는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해 주는 것 즉,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여 서로를 위해 주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름이 갈등을 야기 하는 경우는 생활 곳곳에서 관찰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원가족 문제, 자녀 양육문제 등에 있어서 서로 생각과 방식이 달라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친구 만나는 것을 너무 좋아하여 부부갈등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전 농경 사회에서는 농사를 짓기 위해 형제, 부모, 이웃과 협조해야했고,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나의 아군이 없으면 가족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속에 남자들은 원가족, 형제, 친구들을 '가족'으로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남

편들의 무의식은 이러한 외부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가족을 지킨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가족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부인들은 가정과 아이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남편의 정서적, 물질적 자원이 외부사람들에게 사용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고는 관점은 다르지만 다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면서,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부인들은 남편의 무의식적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픔을 표현한다는 것이 남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 들여져 부부갈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이전에 서로의 '다름'에 대해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인류사회에서의 다름에 대한 문화적 차이는 생존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부족사회에서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를 경우, 상대방이 나를 해칠 수 있기에 다름은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느껴 다름은 싸움과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 인간 사회가 발전 할수록,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서로 가지지 못한 것을 교환하면 서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무역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역을 할 수 있는 종족이 더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다름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곧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라 '다름'의 개념이고 이는 서로 다른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발전에 따라 '다름'은 적대적인 관계에서 서로 이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의 행복에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문화의 융합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는 아직 다름을 받아 들이지 못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갈등이 아니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신혼여행지에서의 폭력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이혼예정이나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의식은 개선되었음

처분 전 상담 서울가정법원

###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집단상담 6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6회, 교육강좌 1회 등  
총 18회 실시

### 상담기간

2015. 9. 24. ~ 2016. 2. 3.

### 상담경과

행위자(남편)와 피해자(아내)는 결혼한 지 2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1세)가 있다. 행위자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처분 전 상담으로 본 소에 6개월 상담위탁 되었다. 사건 발생 후 부부는 별거 중이며 자녀는 행위자가 부모와 함께 양육하고 있다. 피해자는 신혼여행지에서 처음 가정폭력을 경험한 이후 폭언과 폭력의 반복 경험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상담 중 두 사람은 서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혼 의사도 확고하였다. 이에 행위자는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결혼생활의 점검과 이혼 여부에 대한 숙고를, 피해자는 결혼생활의 점검과 이혼 여부에 대한 숙고를 하도록 상담 목표를 정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의 폭력이 잘못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밤새 자신을 집요하게 비난하는 등 언어폭력을 하는 것에 대한 다른 대처법을 알지 못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하였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결혼생활 중 행위자와의 소통을 간절히 원하였

지만 행위자는 욕설, 폭력, 외박으로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소통하려는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심지어 상담기간 중에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친정부모에 게까지 상처를 주고 사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컸다.

행위자는 별거기간 중 피해자가 한 번도 자녀를 찾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재결합의 여지가 없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담당 주치의로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잠자고 먹는 것, 즉 기본적인 생활유지에 힘써 심신의 건강을 회복하라”는 처방을 받았으며 자녀를 보려는 의욕을 내세우지도 못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자기 몸 하나 운신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만일 자신이 아이를 보려고 하였다면 행위자와 시부모가 반대하면서 다시 갈등상황이 촉발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행위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직장 진로가 정해진 후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다. 피해자 역시 건강을 회복한 후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부부 모두 조속한 시일 내에 이혼에 합의하거나 협의로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이혼을 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기간 동안 다른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두 사람 모두 결혼 초기에 의사소통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갈등을 키웠고 결국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행위자의 폭력에 대한 의식은 개선되었으며 본 상담의 결과를 참작하여 법원은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나들이

- 일 시 : 2016년 3월 4일(금) 오전 9시 ~ 3월 5일(토) 오후 3시
-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 용인 에버랜드
- 참가자 : 비혼모 54명, 자녀 51명, 애란 네트워크 직원 및 자원봉사자 53명, 상담소 직원 3명 등 총 161명

### □ 프로그램 개관

#### 1. 「나를 사랑하기」

▷ 강사 : 우애령(작가, 현실요법연구회 상급과정 강사)

강사는 일상 생활속에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를 '마음의 감옥'에 빗대어 설명하였다. 남을 비난하는 것,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문제를 회피하는 것, 우울감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등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강사와 참가자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사는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삶은 의무이자 즐거움"이라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 하였다.

#### 2.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

▷ 강사 : 노재광(아하교육컨설팅 대표, 웃음치료전문가)

강사는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으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삶은 게임처럼 잘 되다가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기 보다는 웃으면서 힘든 상황을 넘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 부모가 괴로워하면 자녀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힘든 순간을 잘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스스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3. 「한부모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 강사 : 본소 조은경 상담위원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법률문제들을 다양한 상담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였다. 강의를 끝난 후, 상담을 원하는 참가자들을 위한 개별면접 상담이 있었으며, 소송구조가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상담소에서 법률구조신청안내를 받도록 하였다.

### 4. 용인 에버랜드 체험



강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용인 에버랜드로 이동하여 자녀와 함께 에버랜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에버랜드 직원의 안내를 받아 ‘사파리월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및 ‘어린이 전용놀이시설’ 등을 자녀들과 함께 이용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놀이시설 이용 사이에 자녀와의 행복한 순간을 기념할 사진을 촬영하였다. 저녁에는 에버랜드 내에 위치한 캐빈 호스텔에서 숙박하였고, 참가자들은 다음날 오전까지 에버랜드에서 자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뒤 점심식사 후 해산하였다.

#### □ 참가자 소감

- 아이가 태어난 후(현재 4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번도 같이 놀이공원에 온 적이 없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강의를 듣고 자녀가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음.

-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항상 우울하고 위축된 기분이었는데, 상담소에서 진행된 강의를 들으면서 그 동안 나 스스로 자신을 내가 만든 감옥에 가두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되었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
- 현재 임신 중이며, 아이가 태어나면 입양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일부러 정을 주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든다”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동안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그 동안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와 놀이공원에 가는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가정법률상담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음.
- 강의를 들으면서, 그 동안 엄마로서만 살아온 자신에서 벗어나 “나 자신”과 진정한 의사소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그 동안 매일매일 생활하는데 급급해서 정작 아이와 진정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게 되었음.
- 아이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직접 양육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에 치여 정작 아이와 많이 놀아주지 못했는데,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강의도 듣고 아이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음.

#### □ 정리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강의를 듣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동안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던 참가자가 매우 인상 깊었다. 다음에 있을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혼모 가정 이 참석하여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지현 교육부 간사



##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 혼인기간 내내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이혼 등 판결

법률구조 2014-134

담당 : 고미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및 위자료 등(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반소)

**내용 :** 원고와 피고는 1987. 3. 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2명의 자녀(29세, 27세)를 두었다. 피고는 혼인기간동안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하였다. 피고는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원고가 만든 밥과 반찬을 싱크대에 쏟아버린 일도 있고 1988년 1월에는 만삭 임산부인 원고를 발로 차며 뺨을 때리고 밤 12시가 넘은 한 겨울에 집을 나가라고 내쫓았으며, 2012년 11월에는 원고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파열상을 가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4년 4월경 원고가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원고는 3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만했다. 피고의 반복적인 폭행에 지친 원고는 이혼을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판결 2015. 12. 22.)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3.부터 2015. 12. 2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과거양육비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2/3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전남편의 혼인의 자가 본인의 친자로 기재된 것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잡음

법률구조 2015-251

담당 : 이미연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내용 :** 피고(여, 38세)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여, 83세)를 모로, 소외 망 김\*\*를 부로 하여 그 사이에 출생한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다. 원고는 1999년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다가 피고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딸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경위를 알아보니 피고는 배우자 소외 망 김\*\*의 혼외자식으로, 원고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로 출생신고 된 것이었다.

고령에 형편이 어려운 원고가 3번 가량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시도하였지만, 구청으로부터 피고가 친자로 등재되어 있어 차상위계층 밖에 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잘못된 친생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15. 9. 24.)

1.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를 부정기적으로 일부분만 지급한 전남편에 대해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

**법률구조 2015-260**

**담당 :** 김미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45세)과 상대방(남, 49세)은 법률상 부부 슬하에 사건본인(여, 16세)을 두었으나, 2006. 1. 10.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청구인이 지정되었으며, 상대방은 이혼 당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런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1년간만 지급하고, 사업의 부도로 인해 2007. 2.부터 2011. 9. 까지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상대방은 2011. 10.부터 다시 사건본인의 통장으로 20만원~50만원 가량의 양육비를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15. 3. 부터는 이마저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1. 2.)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 가.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 나.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5. 11.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2.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남편에 대해 장래 양육비 조정**

**법률구조 2015-273**

**담당 :** 강정한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청구

**내용 :** 청구인(여, 52세)과 상대방(남, 57세)은 법률상 부부 슬하에 사건본인(여, 15세)을 두었으나 2001. 11. 21.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혼인 기간 내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였던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태어난 후에도 청구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2011년 이혼 당시 1500만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고, 이를 변제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위자료 및 양육비 명목으로 총 15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받는다는 내용에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혼 후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연락처마저 바꿨다. 이후 강제집행 결정을 통해 1500만원을 받았으나, 화장품 영업직으로 일하는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액수였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성립 (대구가정법원 2015. 11. 23.)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15. 12.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20만 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
2. 상대방은 매월 1회 이상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되,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 등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청구인과 협의한 후 정한다.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신의 자녀가 잘못 기재된 것을 바로잡고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동친권과 양육비 일시불 조정**

법률구조 2015-337, 339

담당 : 장진호 변호사

사건명 : 친생자존부,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

내용 : 원고(여, 43세)와 피고(남, 47세)는 각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06. 10.경 만나 교제하였다. 원고는 2009. 11. 23.경 피고와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피고는 사건본인을 자신 및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 문\*\*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 하였다. 원고는 2011. 6. 21.경 법률상 배우자와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법률상 배우자 문\*\*와 사건본인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사건본인 간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밝혀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부합하게 바로잡고자 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본인을 제대로 양육하기 위하여, 원고를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자로 지정해주시기를 청구하고, 피고로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받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승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9. 25.)

1. 원고와 사건본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2. 피고 문\*\*과 사건본인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등 조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 12. 10.)

1.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한다.
2.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사건본인에게 “충북 제천시 00빌라 제0층 제000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 이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일본에서 혼인 했으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강제출국 당한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해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5-277

담당 : 이경숙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3세)는 일본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남, 75세)를 만나 2006. 12. 27.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비자발급을 위한 수속 도중 불법체류자로 붙잡혀 2008. 2. 21. 한국으로 강제출국을 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에 변호사 비용이나 강제출국을 막는 등의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고는 5년간 일본으로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피고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명목 뿐인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5. 12. 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인은 일본에서 취업하기 위해 일본인러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생활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타국에서 극히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일본에서 강제출국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혼을 원했으나 일본으로 재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라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신청인은 결국 가정법률상담소에 소송구조를 통해 공시송달로 이혼판결을 받아 혼인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저는 A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A 소유 재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담보제공명령을 하였고, 저는 위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법원이 명한 금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저는 A 사이의 금전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A가 제가 공탁한 금원을 찾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Q

A

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피보전 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주는 대신 나중에 그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하게 됩니다.

이에 민사집행법 제280조 2항, 3항은 가압류에 관하여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가 소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법원은 보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으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도 법원은 필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에 그대로 준용되고 있습니다.

이 담보는 소명의 대응으로서 공탁시키는 담보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는 직접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채무자는 보전처분이 부적절한 경우 그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① 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확정 판결을 얻어 채무자에게 손해 발생의 가능성이 없음이 확실해진 경우이거나 ② 채권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채무자의 동

의를 받거나 ③ 소송 완결 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권리행사의 최고를 거친 후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만 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참조).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의 완결된 때에 확정되므로, 법원은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통상 1주 정도)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그 담보권을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만약 위 기간 동안 채무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귀하는 법원에 권리행사의 최고를 신청한 후 A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법원에 공탁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 〈스포츠라이트〉

감독 토머스 맥카시

출연 마크 러팔로, 레이철 맥아담스, 마이클 키튼,  
리브 슈라이버, 브라이언 다시 제임스



2001년, 미국 3대 일간지 중 하나인 〈보스턴 글로브〉 신임 편집장 배런(리브 슈라이버)은 집중취재팀 ‘스포츠라이트’에게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스캔들에 관한 특집 기사를 주문한다. 산발적으로 재판이 이뤄지고 조금씩 소문이 퍼져가고 있었지만, 도시 자체가 워낙 독실한 가톨릭계 주민들의 커뮤니티다 보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모두 쉬쉬하던 형편이었다. 네 명으로 이뤄진 ‘스포츠라이트’ 팀원들은 취재를 시작하고, 가톨릭 교회의 거센 반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보스턴 지역에서만 약 30년 동안 90여 명의 사제들이 아동을 성추행해왔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성학대 생존자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기자들 앞에서 어렵게 입을 여는 순간, 영화는 오열하거나 격분하거나 자

해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는다. 겉으로는 태연하게, 안정된 일상을 영위하던 이조차 몇 십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무너져 내릴 때에도, 그 허물어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보다 고백을 들은 기자 입으로 단순하게 서술하는 쪽을 택한다. 허물며 어린이들이 성학대를 받는 장면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자들은, 생존자들이 머뭇거리며 “그와 처음으로 접촉했던 건……”이라고 시작하자 “아니요, 정확한 단어를 써야 합니다”라고, 수치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상황을 얼버무리거나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려하면 안 된다고 격려한다. 직접적으로 특정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이 아이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고 당신도 그걸 보면서 아파하라’는 선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정확한 단어로 알려주고 그 학대가 이토록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기반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어린이 성학대가 그저 ‘추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한다. “아이를 키우는 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면 아이의 학대 역시 한 마을의 책임입니다.” 한국영화계에서 특히 이런 식의 성범죄를 전면적으로 다룰 때, ‘리얼리티’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하게 선정적인 장면을 오래 삽입하는 경향에 대해 재고하지 않을 수 없다. 끔찍한 사건을 끔찍하게 보여주는 ‘충격 효과’와 그 성과를 부인할 순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재현의 다른 방식에 대한 고민 없이 재현 자체에만 몰두하는 건 아닐까.

두 번째로 이 영화에서는, 이제는 아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언론인의 직업윤리와 직업인으로서의 태도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파고든다. 여기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동일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 체계에 따라 오랜 시간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세계다. 어떤 사건이 심층 취재거리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자료를 모으고, 사람들을 만나고, 코멘트를 따고, 팩트의 교차 체크를 하는 취재의 과정은 전혀 멋있지 않다. 기사는 “특종이다!” 한 마디로 속속 써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사건이 불러와 파장과 ‘구조적 책임’을 거슬러 올라가며 되문기까지, 피해자들의 용기가 헛되이 흘러가지 말아야 한다

는 책임감 하나로 정말 오랫동안 취재하고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가 수십 년 후에야 겨우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까지, <스포츠라이트>는 바로 그 지루하고 괴롭고 진 빠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다.

<스포츠라이트>에서 다루는 성학대의 역사는 나름의 '선의'로 비겁하게 감춰져왔다. 하지만 결국 그 선의의 벽을 깨뜨리기까지 얼마나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 결국 그 비겁한 선의를 무너뜨리는 건 개인의 양심선언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그 양심선언의 가치가 훼손되거나 다시 묻히지 않도록 다른 개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이뤄진다.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를 알지만, 그 믿음을 깨뜨리면서까지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치부를 밝혀내고 문제제기를 할 때, 그것이 비교적 제대로 받아들여지고 어떤 리액션이 취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세계, 언론과 사회 지배세력의 역할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세계였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스포츠라이트' 팀 기자들은 2003년 풀리처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부문으로 꼽히는 공공봉사 부문 상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스포츠라이트>는 2016년 아카데미 작품상 및 각본상을 수상하였다. 기자들, 그리고 영화인들 모두의 책임감과 성실한 노력이 뒷받침된 당연한 보상이다.

김용언 영화 칼럼니스트



## 2016년 3월 자원봉사자

###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진, 문은희, 박선화, 심무순, 유문숙, 이병주, 한정희, 홍진범 님

###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곽성환, 김선영, 김수정, 김지후, 김진아, 김태주, 박수열, 박은정, 유정아, 장세호, 정수경 변호사 님

###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재희, 박영립, 이승주, 임주용, 장주용, 천정환 변호사 님, 이진철 재판연구원 님

###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오준석 변호사 님

### • 학생 자원봉사

차혜진, 이정현, 정주은, 맹현규, 이현지, 전승민, 이진실, 이지원, 최경수, 김수현, 임재우, 전다윤, 이에린, 황정민, 김유진, 박정현, 이경철, 심우봉, 허난영, 조혜린, 한승빈 님

### •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봉사

정근정, 권새롬 님

## 후 원

###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천정환, 장주용 님

###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 상담소 소식



## 2016년도 정기총회

본소는 지난 3월 15일 본소 8층 대강의실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차명희 이사장의 진행으로 열린 이날 총회는 개회, 국민의례, 인사말씀, 전회 회의록 낭독, 감사 보고, 안건, 폐회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1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2월 이사회를 통과한 신입 감사에 대해 인준이 이루어졌다.

### 최문원 신입 감사

- 성대 경제학과 졸업/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 석사)
- 대명회계법인 대표이사(현)
-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현)

##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 심포지엄 개최

상담소에서는 창립 60주년의 해를 지내면서 첫 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가정폭력의 다면적 심층 분석과 대응 및 정책'에 관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상담소가 1956년 창립 이래 가족구성원 간의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의식개선 교육, 가정폭력특별법의 제정과 개정, 가정폭력피해자

를 위한 법률구조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왔으나 여전히 가정폭력이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요인이며 현대 가족의 변화 속에서 그 양상은 더욱 다양해지고 정도도 심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본소 관배희 소장이 좌장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본소의 '가정폭력가해자 수탁사건 상담통계 발표'에 이어 권양희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 고경순 과장(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장희숙 교수(성공회대학교), 김혜선 교수(강원대학교), 장운경 교수(연세대학교)의 발표로 진행되었다.(관련사진 2면)

## 교육부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및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 강좌

본소에서는 3월 3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는 노숙인 시설 이용자 및 시설종사자 6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파산, 면책 및 개인회생관련 제도 안내」(본소 정연이 상담위원), 「신용회복 지원제도 안내」(신용회복위원회 이현주 심사역),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신청안내」(건강보험공단 최윤정 과장)의 강의를 듣고, 강의가 끝난 후 개별적으로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에 관한 상담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3월 31일에는 김병후 원장의 강의로 “마음의 구성과 감정”이라는 주제로 『부부관계향상을 위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강의에는 총 6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가자들은 감정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 직장체험 연수 - 윤세미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정연이, 황현정, 박소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임채영 변호사, 박도민, 권하빈, 이성국 공익법무관

#### 출장 법교육 및 상담

- 3.3 노숙인 신용회복 교육 및 상담  
- 정연이 상담위원
- 3.4 학교폭력예방교육 - 별망중  
- 최수진 상담위원
- 3.21 학교폭력예방교육 - 광명광성초  
- 조은경 상담위원

- 3.22 학교폭력예방교육 - 백양초  
- 김진영 상담위원
- 3.28 학교폭력예방교육 - 울현초  
- 최수진 상담위원
- 3.28 각당복지재단 상담원 법교육  
- 박소현 상담위원
- 3.29 학교폭력예방교육 - 심곡초  
- 차연실 상담위원
- 3.29 학교폭력예방교육 - 도래울중  
- 조은경 상담위원
- 3.30 학교폭력예방교육 - 동패초  
- 차연실 상담위원
- 3.31 학교폭력예방교육 - 성주초  
- 차연실 상담위원
- 3.31 학교폭력예방교육 - 하일초  
- 황현정 상담위원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3월 1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성·청소년·아동 관련 민간단체 간담회에 참석하였고,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28일 각당복지재단의 죽음준비교육 지도자 과정에서 “상속·유언·유류분”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3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 곽배희 소장, 여성신문과 인터뷰 등

본소 곽배희 소장은 본 상담소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가정폭력의식개선 교육 동영상 제작의 기술평가위원회에 3월 3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참석했다. 7일에는 생명보험협회 사회공헌위원회 김홍원 신임 사무처장의 방문을 받고 환담했다. 11일에는 본소의 창립 60주년과 관련하여 여성신문과 인터뷰를 했다. 21일에는 여성변호사회 신임회장단(이은경 회장, 진형혜 공보이사, 이현주 총무이사, 임지영 사무차장)의 방문을 받았다. 24일에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여성계 인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 지부소식

## 강릉지부

3월 3일 법률구조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광록, 이현석, 조영삼, 홍영표 변호사 참석). 16일 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

## 거제지부

3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여성 폭력예방강사교육 스테디를 실시하였다. 23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 구리지부

3월 7일, 8일, 14일, 15일, 22일, 28일, 29일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정수경, 김효경, 장경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 출장상담, 조정을 실시하였다. 3월 12일, 26일 대구가정법원 협의이혼의무상담제 주말프로그램 부모교육 “협력하는 부모” 를 실시하였다. 7일 정기이사회, 21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승익, 이태현, 정익창, 전하은, 남호진, 김이조, 도낙희, 이희대, 박준혁, 김주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총 9회

실시하였다. 성남시정보문화센터, 성남 중앙도서관 등에 가정상담지, 상담소 리플렛으로 총 16회 홍보물을 배포하였다. 3월 11일 제 55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민진국, 강은혜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이경숙, 이수연, 임상준, 임재훈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수원지부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 협의이혼 상담, 이혼 전 부부 심층상담을 실시하였다. 3월 18일 정기운영이사회를 개최하였다. 강은혜, 김춘희, 김현명, 박지훈(성남), 박지훈(수원), 배정완, 양승철, 전태우, 최유나, 한두환, 한승일, 황미옥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순천지부

3월 17일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지원하는 협력망 구축을 위하여 구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 울산지부

3월 14일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익산지부

3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31일 소송구조 협약식 및 간담회를 가졌다.

## 전주지부

3월 8일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상담,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1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24일 전주지방검찰청 등에 가정상담지, 리플릿 등으로 홍보하였다.

## 제주지부

제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을 총

12회, 총 25건 실시하였다. 3월 4일 제주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강문원, 김홍면, 한대삼, 현창곤, 황인철, 박현민, 김수진, 최호웅, 조준범, 김세희, 백신옥, 강문숙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중구지부

1월 7일~3월 24일까지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3월 3일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전 상담을 실시하였다. 박진석, 이재경, 이수희, 정형준, 황은하, 이영주, 고승현, 박수열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진주지부

3월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 및 소송구조를 하였다.

## 창원·마산지부

3월 8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과 10일, 17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16일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백경석, 이창희, 이재영, 고정항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청주지부

3월 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 춘천지부

춘천시로부터 ‘여성폭력피해자의 법률구조지원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법률교육’ 사업비로 2천만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3월 25일 ‘나, 너 그리고 우리의 행복찾기 부부캠프’ 를 실시하였다. 임미선, 허남정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 2016년 2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6년 2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1,961건으로 본부가 6,785건, 지부가 5,176건이었다.

본부는 6,274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294건·소장 등 서류작성 177건·소송구조 40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4,481건·화해조정 604건·소장 등 서류작성 34건·소송구조 57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274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6년 1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21.3%→22.1%), 사실혼해소(1.5%→2.6%), 파혼(0.2%→0.3%), 혼인무효·취소(0.5%→0.6%), 부양(0.9%→1.0%), 가사절차(3.6%→4.3%)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부동산관련(0.2%→1.3%),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성폭행(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274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59건(20.1%), 전화상담 4,799건(76.5%), 통신 및 인터넷상담 215건(3.4%),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 2016년 3월 본부 상담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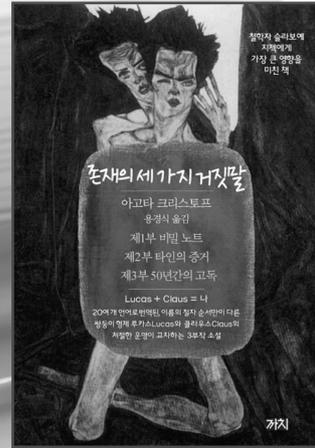
총상담 7,178			
법률상담 (6,508)			
면접	전화	통신	지상
1,318	4,977	212	1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64		246	60

\* 2016/3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43,892건

지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6,785	1,259	4,799	215		지상 1	6,274	294	177	40
강릉 (033) 652-9555	78	45	23				68	6		4
거제 (055) 633-7636	110	81	29				110			
광주 (062) 672-6011	73	27	46				73			
구리·남양주 (031) 551-9976	251	148	56				204	46	1	
군산 (063) 442-1560	116	43	64				107	7		2
대구 (053) 745-4501	464	154	37	1		출장 158	350	114		
대전 (042) 520-5258	220	38	173	3			214		6	
제주 (064) 753-9421	405	158	124				282	121	2	
동해 (033) 535-0188	118	44	74				118			
목포 (061) 273-2514	49	1	47				48	1		
부천 (032) 667-2314	248	58	143				201	47		
성남 (031) 707-6661	308	146	77	8			231	68	6	3
수원 (031) 243-4600	412	132	197	1		출장 36	366	35	1	10
순천 (061) 753-9910	144	67	61				128	15		1
충구 (02)2238-6554	203	139	62				201			2
안동 (054) 856-4200	51	9	22			출장 1	32	17		2
울산 (052) 246-9568	108	14	91				105		1	2
익산 (063) 851-5113	228	82	140			출장 4	226			2
인천 (032) 865-1120	258	97	131				228	10	5	15
전주 (063) 244-2930	234	120	102	5	3		230		1	3
정읍 (063) 535-3705	102	38	40				78	22		2
진주 (055) 746-7975	116	29	46				75	33		8
청원·미산 (055) 261-0280	252	145	85	1			231	21		
청주 (043) 257-0088	159	57	73				130	23	6	
춘천 (033) 257-4688	177	63	13			출장 94	170	6	1	
태백 (033) 554-4004	52	22	27			출장 3	52			
평택·안성 (031) 611-4251	101	34	53				87	12	2	
제천 (043) 644-5690	75	36	37				73			2
포항 (054) 283-7555	64	13	50				63			1
지부총상담	5,176	2,040	2,123	19	3	출장 296	4,481	604	34	57
총 상담	11,961	3,299	6,922	234	3	출장 296 지상 1	10,755	898	211	97

\*\*2016/2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159,417건

##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



아고타 크리스토프 지음  
 용경식 옮김  
 까치, 2015

근래에 읽은 가장 흥미진진하고 슬픈 책이었다. 인터넷 서점을 주로 이용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선물 같은 책을 고를 때가 있다.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을 검색하다 얻어 걸린 이 책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 그렇다. 헝가리의 작가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이 책을 읽은 지젝은 작가의 이름을 처음 듣고 아가사 크리스티를 잘못 발음한 것인 줄 알았다고 하면서 이 책을 읽은 뒤 “아가사의 추리소설보다 아고타의 소설이 훨씬 더 무섭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다는데 깊이 동감하는 바다.

흥미롭고 박진감 있고 잔혹하면서 슬펐다. 처음 몇 장을 시작하다가 점점 빠져들어서 꽤 분량이 되는 책을 한 번에 읽었다. 역자의 말까지 다 읽은 후에는 아쉬운 마음에 몇 차례 거슬러 올라가며 책장을 뒤적이지도 했다. 작가가 몇 년에 걸쳐 3부작으로 발표한 <비밀노트> <타인의 증거> <50년간의 고독>을 한 권으로 묶어 발간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였다. 각각의 완결성이 있지만 세 가지 이야기가 한 번에 이어지면서 더욱 폭발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이름의 철자 순서만이 다른 쌍둥이 형제 루카스(Lucas)와 클라우스(Claus)의 처절한 운명을 담은 이 책은 <비밀노트>에서 <타인의 증거>로 또 <50년간의 고독>으로 연결되면서 그 배경은 유럽 대륙에서 한 소도시로 그리고 한 가족으로 시점이 옮겨가는데 그 주제는 절대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간다. 쌍둥이 어

린 형제가 한 몸처럼 지내는 1부는 간결한 문체로 짧게 한두 장 정도 씩 긴박하게 진행되고 각각의 삶을 살게 되는 두 사람의 기억이 3부에서 공유되는데 그것은 서로 모순을 드러내다 결말에 이르면 마치 운명 과도 같은 쌍둥이의 동일한 삶의 비애를 보여준다. 또한 전쟁의 참혹함 속에 아이들이 겪는 폭력적인 암흑 세계 그리고 헝가리 반체제 혁명의 시기를 배경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아이덴티티 상실을 보여주는 2부와 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또한 아이덴티티의 회복이 그려지는 3부 또한 비극적으로 다가온다. 격동적인 시대를 겪어내는 인간과 세계의 관계가 마치 그리스 신화와 같은 비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타인의 증거>에 대한 한 문학지의 평에 공감하며 옮겨본다.

“독자는 어느 페이지, 어느 줄에서나 문득 자신이 읽은 것 중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다) 카프카에서 쿤데라에 이르기까지 풍자와 해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한 풍자는 거의 없었다.”

번역본은 에곤 실레의 <자기 응시자들>(1910)을 표지에 담았는데 탁월한 선택으로 보였다.

이 숙 현 편집부장

# 2016년 4월 교육부

##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관련 비디오시청
- ▶ 일정 : 매주 금요일 오후 2:00 ~ 3:30
- 2단계 : 집단 심리상담  
(대상 : 본소 법률상담 내담자, 사전 예약 필수)
- ▶ 일정 :매월 둘째 · 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 ▶ 강사 : 김명준 소장(세은심리상담연구소)

##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  
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무료  
공개강좌

- ▶ 일시 : 2016년 1월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2시 ~ 4시(8월은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정신건강 의학과 원장)
- ▶ 일정 및 강의주제

일시	강의제목
4월 28일(목)	관계의 뇌와 사랑
5월 26일(목)	분노의 의미와 기능
6월 23일(목)	마음읽기와 정신적 성숙
7월 28일(목)	전이감정과 부모세대와의 갈등
9월 22일(목)	자기보호 위한 자기주장과 거절 공포
10월 27일(목)	친밀감, 관계의 유형 그리고 심리적 거리
11월 24일(목)	외도의 유형과 대처
12월 22일(목)	임상 예를 통한 부부갈등 상담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